

WTO 전자상거래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이신규**

요 약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OECD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WTO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WTO에서 전자상거래의 논의는 주로 국제무역 관련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자상거래의 분류문제, 서비스의 분류, 관세부과, 공급모드, 지적재산권 문제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과 전략이 요구된다.

1. 서론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상거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마케팅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의 시장으로써 경제활동과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21세기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할 새로운 무역라운드인 인터넷라운드(internet round) 또는 사이버라운드(cyber round)라고 명명되어 소위 밀레니엄 라운드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개별소비자와 정부는 물론 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래산업구조 및 사회·문화 등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저한 시장분석과 전략설정을 통해서만 인터넷이 제공하는 새로운 무역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현재 초보단계에 있으며 전자상거래가 보다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인증, 보안, 지불시스템 등의 다양한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이 해결될 경우 전자상거래는 세계화·정보화 및 지식집약화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의 상거래와 교역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EU,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의 패러다임 속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며, 인력확보 등을 통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부차원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국제무역기구(WTO) 등의 국제기구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WTO에서의 논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 문제를 비롯하

* 본 논문은 2002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배재대학교 경영정보학부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여 주로 무역 관련 문제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른 국제기구에서와는 달리 논의의 결과가 강제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무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적인 연결망을 지닌 인터넷과 전자문서교환방식(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같은 각종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인 사이버무역(cyber trade)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이 제정됨으로써 이러한 국제규범이 다자간 협상에서의 새로운 경쟁규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WTO 산하 위원회별로 논의된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쟁점 사항들은 인터넷 등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전송물의 정의 및 분류와 관세, 내국세 등과 같은 세제부분, 그리고 기술표준, 국내규제, 원산지, 지적재산권보호, 개발도상국 지원방안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 쟁점들에 대한 논의결과가 이미 각 산하기구의 보고서로 제출되어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이들 쟁점사항들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경제발전을 무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전자상거래방식에 의한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규범화에 우리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화와 관련된 WTO의 역할을 고려할 경우 현재까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WTO에서의 논의를 정리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시대의 상징인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무역의 급속한 발달은 과거 기계문명시대의 변화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국제경제환경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향후 무

역기업들은 기존시장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관계에서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 나라와 주요 교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이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와 같이 급속하게 전개되는 세계무역의 사이버화와 이와 관련된 국제통상규범의 제정움직임은 이제 정보화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 경제와 무역발전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WTO에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요 쟁점별 이슈를 정리하고, 무역정책적 측면에서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통상 문제

인터넷은 전세계적인 통신망에로의 연결이기 때문에 국경의 의미가 없다. 인터넷을 통한 국제무역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간에 신뢰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2.1 무관세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문제는 미국이 무관세화를 제기하면서 국제적인 통상이슈로 대두되어 T다. 미국은 각국이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부과에 따른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전

에 무관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미국이 미리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강인수 외, 1999). 미국의 이러한 노력에 EU는 1997년 12월 미국과 EU의 정상회담에서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상품 및 용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주문되고 수송되는 상품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주문되었다는 요인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1998년 5월 제2차 WTO각료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미국과 EU의 주도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잠정적인 무관세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이와 같은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범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이럴 경우 자국의 조세수입문제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관세와 관련하여 부각되는 통상문제는 무관세의 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무역거래는 온라인 상품(on-line products)과 오프라인 상품(off-line products)영역으로 구분된다. 온라인 상품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조사, 협상, 주문, 계약체결 및 대금지불단계를 통하여 주문한 상품의 배송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한 상품을 의미하고, 오프라인 상품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항공이나 해운수단의 형태를 거쳐야 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온라인 상품은 상품의 인도까지 인터넷에서 완료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악,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의 디지털제품과 여행정보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온라인 상품은 전자신호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산업자원부, 1999). 하지만 인터넷에 의하여 주문되지만 제품의 인도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상품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상거래가 상품인지 아니면 서비스인지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서비스가 전자적 수단에 의

하여 제공되는 경우 이를 서비스협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경우, CD, 음반,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디지털정보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이 전통적인 전자적 수단으로 인도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상품으로 인정되어 관세를 부과하고, 인터넷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물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로 인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WTO 서비스무역협정의 기술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동일제품에 대하여 전자적 전송수단으로 인도되는 경우 상품으로 인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인터넷에 의하여 인도되는 경우 서비스로 인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동일상품에 대한 이중가격이 형성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2 조세

미국은 1997년 7월 1일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을 무관세시대로 인정하자는 주장과 함께, 기존의 조세 이외의 추가적인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발표하였다(정영현, 1997). 미국의 이러한 주장은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의 부과를 금지하자는 의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역이 미국이 될 것임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의 면제 및 감면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EU는 1997년 7월 본(Bonn)선언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여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원칙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내국세 문제에는 과세가 투명하고 추가적인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조세회피나 탈세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수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비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1998년 10월 오타와에서 개최된 OECD각료회의에서 승인된 배경문서에서는 전자상거래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5가지 요소를 열거함으로써 기존의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서 과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¹⁾ 동 문건은 추가적으로 오타와 각료회의 이후 논의할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이슈들을 열거하고 있다. 납세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국제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세행정, 납세자과약 및 필요정보와 관해서는 전자상거래 참여기업에 대한 전통적인 납세자 과약관행의 채택문제와 전자서명에 의한 납세자과약을 허용하기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논의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징세와 통제에 대해서는 자진납세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비지의 개념, 공급장소 규정 및 서비스와 무형자산의 정의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달을 과제로 채택하였다. 국제조세조치 및 협력에서는 고정사업장 및 귀속소득에 대한 과세관할권, 과세소득구분, 이전가격지침 등의 명확화와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조세협정의 활용증진방안 및 유해조세경쟁 방지방안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2.2.1 소비자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1) 이에 관련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① 중립성(neutrality) : 전자상거래의 여러 형태간 상거래의 전통적 형태와 전자적 형태간 과세가 중립적이며 공평할 것, ② 효율성(eficiency) : 납세자의 납세순용비용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이 최소화될 것, ③ 명확성 및 단순성(certainty and simplicity) : 과세규정은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단순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납세자가 거래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세가 계산되는지의 과세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을 것, ④ 효과성 및 공정성(effectiveness and fairness) : 과세는 적기에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세회피 및 탈세의 가능성은 최소화될 것, ⑤ 유연성(flexibility) : 과세체계는 기술 및 상거래의 발전에 항상 보조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할 것 등이다.

과세하는 소비세로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OECD 모든 회원국이 도입하고 있다. OECD회원국에서 부가가치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0% 정도이다. 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용역의 거래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방법으로 과세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조세수입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조세수입과 관련된 문제 이외에도 각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인터넷을 통한 상품과 용역의 제공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통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공급장소에 대한 문제이다. 통상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내에서 소비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국내에서 일정한 세율로 과세되며, 국외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지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으며, 국제무역 측면에서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수입된 상품이 모든 동일한 조세부담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무역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공급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공급자의 사업장 및 고정시설이 소비자가 소재하는 지역 또는 국가에 존재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급장소의 개념과 소비장소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에 적용되는 고정장소의 개념은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있어서 포괄적인가 하는 의문이 발생하며, 기존의 공급장소 및 사업장소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상품과 서비스의 구분에 대한 문제이다.

부가가치세에서 재화나 서비스는 구분하는 과세된다. 기술의 발달로 출판물 등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경우 상품이 물리적 실체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문제이다. EU의 경우 통신이나 방송서비스의 경우 공급자의 소재지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기술자문서비스나 데이터프로세싱, 정보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소재지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급지에서 과세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러한 구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서 과세권이 달라질 수 있다.

2.2.2 소득세

국제조세의 기본적인 과세원칙들은 전자상거래의 도래로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들이 외국에서 고정사업장 및 자회사 등의 거점을 확보하지 않고 비즈니스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첫째,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OECD 모델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 1항에서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되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원천지국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및 제조업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문제가 발생한다.²⁾ 전자상거래에 있어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① 웹사이트가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웹사이트가 사업장소를 구성하는지의 결정여부, ③ 서버가 고정되어 있다고 간주해야 하는지의 여부, ④ 웹사이트를 통한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넘어선 활동인지의 여부, ⑤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경우 귀속소득결정과 관련한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이전가격에 관한 문제이다. OECD는 1995년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을 발표하여 다국적기업 내 이전가격을 수정할 기본원칙으로 정상가격원칙을 설정하고 비교가능한 제3자간 거래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³⁾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이전가격의 과세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거래접근방식 적용의 어려움, ② 비교가능성 분석의 어려움, ③ 기능분석의 어려움, ④ 무형자산의 구분과 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셋째, 사업소득과 사용자 소득의 문제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 정보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가 혹은 사용자소득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OECD 모델조세조약은 사용료를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과학작품에 관한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정의하고 있다. 서적의 디지털을 다운로드(download)한 소비자는 그 형식을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별이 모호해진다.

2) 기존의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의하면 현지국에 물리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가 시간적, 장소적, 사업목적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국이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3)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②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 ③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등이 있다.

2.3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분야는 지적재산권이며 이 중에서도 저작권과 상표권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다. 저작권은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그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이며 창작자의 인격이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대상은 인간의 모든 정신적 창작물이며, 전통적 의미의 도서는 물론 음반, 테이프, 그림, 조각물, 사진, 필름, 악보, 컴퓨터프로그램, 광고문안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인정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저작권문제는 거래대상인 저작물의 불법이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무단복제, 불법유통 등으로 인하여 저작자가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조치 등이 문제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재화가 인터넷의 급속한 사용으로 인하여 무차별하게 전송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가 요청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디지털재화의 분야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이다. 뿐만 아니라 도메인명에 관련된 상표권 등록, 경쟁사명 혹은 상표를 경쟁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산의 도메인명으로 등록하는 행위, 온라인 콘텐츠에서 상표권이나 상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비방 및 음란으로 간주되거나 인종차별적 표현 및 폭력 등 불법행위를 자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주소인 도메인명과 상표권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침해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품질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는 친숙한 상표권에서 신뢰성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와 탐색엔진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인터넷상의 주소인 도메인명이 법인체의 신원확인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상표권과의 혼동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인터넷 도메인명은 월드와이드웹(www) 서버에서 신분증의 역할을 할 뿐이며 보호받는 지적재산권이 아니다. 인터넷 도메인명과 상표권과의 분쟁은 협상이나 법적 소송을 통하여 해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중재조정센터를 설치하여 도메인명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도 1999년에 '인터넷주소무단점유방지법'을 제정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도메인명을 선점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2.4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비 및 부대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위장, 사기, 기만에 의한 피해가능성이 많다. 협상력의 열위, 정보부족, 선택의 강요 등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의 쟁점으로 제시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 기만거래의 방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적은 비용으로 쉽게 신분을 속이고, 소재지를 바꾸어 가면서 가상점포를 통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 기만거래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들을 사기, 기만거래로부터 보호하고 전자상거래의 편리성을 향유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통상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둘째, 소비자피해에 대한 규제문제이다. 전자상거래는 국경이 없는 인터넷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자상거래의 소비자피해 및 분쟁의 처리와 관련하여 책임소재의 규명, 분쟁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설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통상산업부 산하의 '전자상거래 실증추진협의회'(ECOM)에서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① 전자상거래상의 계약취소 및 무효와 관련된 국내법 검토, ② 민간부문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③ 소비자-입점자간의 매매가이드라인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중에서 '소비자거래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에 대해 광고, 선전, 권유, 계약, 상품배달, 상품교환 및 반품, 대금지급, 안전대책, 개인정보, 어린이보호조치, 불만처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요 인터넷쇼핑몰, 인터넷 서비스공급자(ISP), AOL 같은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간의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보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5 내용물보호

인터넷의 발전으로 음란, 불건전한 정보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국과 EU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개방된 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되는 내용물을 규제하기란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사회적·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규제수

준을 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통상문제는 불법 또는 음란정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과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는 특정 웹사이트를 접속하여 주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여부와 광고내용 등의 규제이다. 미국은 전자상거래의 내용물에 대한 제한규정 및 정책수단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하여 최소한도로 시행하자는 입장인데 반하여 EU는 일부 회원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불건전 내용물의 유포를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각국에서 자국의 방송프로그램이 방영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문제삼아 이러한 제한이 인터넷까지 확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의 경우 1996년 10월에 '인터넷상의 불법 및 유해 내용물 규제에 관한 제한'을 발표하고 1997년 3월 이사회에서 이를 채택하였다. 독일은 음란물 규제를 가능케 하는 '멀티미디어법'을 1997년 8월부터 시행하였다.

2.6 통신보안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필수적이다. OECD를 중심으로 개인적인 정보 및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규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7년 3월 OECD에서 채택된 암호화 지침은 개인의 비밀보장과 암호화 기술의 거래를 가능한 한 시장에 맡기되 국가가 최소한의 개입만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암호화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과거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의 규정에 따라 암호화의 수출통제율을 40비트 이하로 제한하는 등 암호화 장비의 반출에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1996년 10월 암호화프로그램의 대외수출 통제를 완화하면서 담당기관도 국

무부에서 상무부로 이관하였으나 일부 시스템은 여전히 군수품으로 분류되어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EU는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핵심 암호화기술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1997년 10월 인터넷상의 보안강화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① 디지털 서명에 관한 EU공동의 개발 장려, ② 인터넷 보안강화와 관련된 정보교환을 위한 범유럽 인터넷 포럼 창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안문제와 관련하여 OECD에서는 신뢰성 있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암호키의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2.7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에서는 개인거래정보 및 기업비밀의 유출가능성이 높다. 전자상거래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인증기관에 막대한 개인정보가 축적됨으로 이에 대한 오용의 우려가 있으며,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에 의한 대금결제과정에서 도청 또는 저장된 전자화폐일련번호 정보, 신용카드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이 있다.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의 직업,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표적마케팅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개인 및 기업정보의 도용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사항의 증명 및 보상방안의 강구가 요청된다. 해킹에 의한 왜곡·변조·손상방지를 위하여 암호체계·전자서명 등의 관련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정부규제나 법제정보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입장인 반면, EU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III. WTO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동향

전자상거래 관련 문제를 공식적으로 WTO에서 제기한 것은 1998년 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에 대한 국제규범화(codification) 제안을 3월 무역개발위원회가 의제로 채택하면서부터이다. WTO의 이사회별 전자상거래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상품무역이사회에서는 주로 시장접근, 관세평가, 수입허가, 관세와 부과금, 원산지규정, 분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는 GATS협정의 적용대상범위, 최혜국대우, 투명성, 개도국 참여, 국내규제, 경쟁관련조항,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구체적 약속, 관세, 분류 등 규정전반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사회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과 상표권에 대한 보호 및 기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문제, 집행관할권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3.1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규범 적용문제

상품무역에 적용되는 GATT의 법적 체제와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는 GATS의 법적 체제에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내국민대우의 적용상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내국민대우는 WTO 회원국이 외국상품을 국내상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데 GATT에서는 내국민대우가 일반적인 의무이고, 이는 내국세 및 국내규정과

같은 국내조치에 적용되고 관세와 같은 국경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⁴⁾ 이에 반하여 GATS에서는 내국민대우가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지만 이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다. GATS의 내국민대우는 회원국이 명시적으로 양허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실제로 회원국들의 많은 제한이 존재한다.

둘째, 관세와 관련하여 GATT에서는 회원국이 자국의 관세율을 무관세(tariffs at zero)로 양허하지 않을 경우 수입에 대한 관세의 부과를 상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GATS에서는 회원국의 조세제도가 내국민대우약속과 일치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관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셋째, 쿼터와 관련하여 GATT는 특정한 긴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수량제한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GATS는 수량제한은 회원국이 제한 없는 시장접근의 제공을 약속한 분야에서만 금지된다.

수량제한이 부과되지 않고, 내국세 및 국내규정을 통한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전자적으로 전달된 미디어상품이 상품으로 분류된다면 무관세대우의 결정은 사실상 완전한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것이다. GATS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무역은 회원국이 행한 구체적 약속에 주로 의존한다. 특히 서비스무역에서 관세는 그 속성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서비스무역으로서 전자거래에 대한 관세부과의 금지는 의미가 없다. 관세를 조세의 일부로서 고려한다면 회원국이 특정 분야에서 내국민대우를 제공할 약속을 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모든 차별적 조세는 금지된다. 만일 회원국이 내국민대우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경우 관세 이외의 차별적 내국세 부과는 자유롭게 된다.

1998년 9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된 작업계획서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제공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WTO, 1998).

<표 1> 상품 및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WTO핵심규범 비교

	내국민대우	관세	쿼터
GAT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의무 · 원칙적으로 예외불인정 · 국내조치에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이 관세를 무관세로 하지 않는 경우 허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특정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허용하지 않음
G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의무가 아님 · 회원국이 명시적으로 양허한 서비스 부문에만 한정 · 서비스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무역의 성격상 국경조치로서의 의미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이 제한 없는 시장접근을 부여하기로 약속하지 않는다면 허용

넷째, WTO규범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문제이다. 특정상품에 대한 WTO에서의 대우는 동 상품이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대상이 상품인지 혹은 서비스인지에 대한 분류가 상당히 중요하다. GATT의 적용을 받는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활동 중에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품을 주문하고 인도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GATT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자문서비스나 회계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GATS규범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콘텐츠가 CD와 같이 기록매체와

4) GATT1994 III조

동일하게 취급되었던 과거에는 GATT규범을 적용하였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기록매체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상품으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로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다. 현재까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 등은 디지털콘텐츠를 상품으로 분류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EU 등은 서비스로, 그리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제3의 영역으로 구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디지털콘텐츠를 상품으로 분류하자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금까지 기록매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왔으며 전자상거래의 환경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자유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GATS보다 훨씬 규율이 강한 GATT규범을 따라서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디지털콘텐츠를 서비스로 분류하자는 입장은 영화와 음악과 같이 기록매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성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기록매체와 분리될 경우에는 물질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⁵⁾

셋째, 제3의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디지털콘텐츠는 지적소유권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무형재화로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TRIPS협정은 GATT나 GATS와 달리 무역자유화의 자체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무역자유화를 전제로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에 대하여

회원국이 실시할 수 있는 규제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회원국은 지적소유권의 보호의무는 있지만 무역자유화의 의무는 없게 되며,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쟁점에 관하여 EU와 미국간에 있을 수 있는 타협안으로, 디지털 제품을 서비스로 분류하되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에 따르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다. 또 다른 보다 자유롭게 하는 방안으로 분류논의는 제쳐두고, 특히 디지털제품이 협상된 서비스 분야의 약속내용과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을 때는 GATT와 GATS 중 가장 자유로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3.2 서비스무역협정(GATS) 규범

전자상거래의 대부분이 서비스무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WTO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GAT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다. 상품무역이사회 다수의 회원국은 상품무역이사회에 위임된 전자상거래 대부분의 측면에 대하여 전자적 전송이 어떤 경우에 서비스, 상품 또는 제3의 유형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WTO에서 논의동향으로 미루어볼 때 대부분의 전자상거래는 서비스무역으로 정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

기존의 서비스가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GATS협정의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5) 서비스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명확한 경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상품의 본질은 물리적 외형의 존재유무와는 상관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독립해 존재하거나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정보의 경우에도 물리적 외형과는 상관없이 서비스보다는 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 일부 회원국 대표들은 모든 전자적 전달물은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몇몇 회원국 대표들은 이를 상품으로 분류하여 GATS보다는 GATT에 종속되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상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일부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상품에 대하여 새로운 범주를 구성하지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원국들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들 자체가 서비스무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GATS규범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는 GATS의 기술중립성원칙(technological neutrality)으로 이것이 서비스의 전자적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비스무역이 사회로부터 일반이사회에 제출된 최종보고서에서는 기술중립성원칙과 관련하여 ① GATS는 그 제공수단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전자적 제공에 영향을 주는 조치는 GATS의무의 적용을 받게 되고, ② GATS에는 서비스의 제공수단을 구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GATS협정은 기술중립적이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WTO, S/L74 27 July, 1999).

WTO 서비스협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의 공급형태는 ①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②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③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④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로 원래 개별적인 서비스거래의 공급모드를 제시하기보다는 서비스 무역의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안되었다. 네 가지 공급모드는 서비스가 국가별로 규제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GATS의 범위를 정의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또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GATS하의 개방약속일정에 대한 기초로 활용된다.

공급모드는 서비스 공급시점에서의 소비자 및 공급자의 물리적 위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방법으로 전자상거래의 공급모드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GATS의 공급모드는 인터넷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1990년대 초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였다. 즉 1형태인

국경간 공급과 2형태인 해외소비가 3형태인 상업적 주재와 4형태인 자연인의 주재에 비하여 해당되는 부문이 거의 없었다. 1,2형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에는 시장규제와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1형태는 원거리통신과 방송, 2형태는 관광여행과 같은 분야별 예의 열거로 충분하였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기존의 공급방식 체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1형태와 2형태는 기술적 특징으로 인해 이들 사이의 불명확해졌다. 1형태와 2형태간의 구별이 어렵고, 전자상거래를 어느 공급형태로 분류할 것인가 하는 명백한 기준이 현재로는 없는 실정이어서 향후 이 문제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정에서 주요 과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거래환경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1공급형태보다는 2공급형태로 전자상거래를 정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Panagariya, Arvind, 1999).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급형태의 분류문제는 기존의 GATS협상에서 이미 합의된 자유화 이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할권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WTO회원국간에 시장접근목적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는 2공급형태를 지향하게 되고 소비자보호목적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1공급형태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는 규제가 없는 환경하에서 발전하여 왔으나 GATS상의 규제가 향후 전자상거래의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규제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자상거래의 주요 쟁점인 프라이버시, 공중윤리와 문화정책, 미성년자 보호, 문서인증, 지불체제의 안정성, 암호화, 도메인명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WTO 영역밖에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민간부문이 WTO가 전자상

거래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다루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인터넷의 발전으로 특별히 전자상거래에 맞춘 새로운 국제규범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양면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GATS협정 제6조(국내규제), 제8조와 9조(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영업관행)와 통신부속서와 제14조(일반적 예외)가 관련된다. 전자상거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① 서비스부문에 대해 현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심화시킬지, ② 전자상거래의 특정 쟁점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 규제내용을 인터넷 환경에 적합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하는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내규제와 관련하여 GATS협정은 국내 규제가 '서비스 교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어서는 안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이상으로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협상의제로 부각되는 문제는 ①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정책의 목표설정 여부, ② 콘텐츠에 적용되는 규제와 통신전송에 적용되는 규제의 장단점 및 합리성 검토 등이다.

둘째,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영업관행의 핵심은 통신망에의 무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본통신서비스가 아직 독점화 되어있는 국가의 공급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독점적 인터넷 공급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되는 여타 서비스에 대한 개방약속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3.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문제

전자상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분야는 지적재산권분야이며 이중에서도 저작권과 상표권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다. 저작권은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그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이며 창작자의 인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대상은 인간의 모든 정신적 창작물이며, 전통적 의미의 도서는 물론 음반, 테이프, 그림, 조각물, 사진, 필름, 악보, 컴퓨터프로그램, 광고문안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인정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저작권문제는 거래 대상인 저작물의 불법 이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무단복제, 불법유통 등으로 인하여 저작자가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조치 등이 문제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재화가 인터넷의 급속한 사용으로 인하여 무차별하게 전송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디지털재화의 분야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이다. 뿐만 아니라 도메인명에 관련된 상표권 등록, 경쟁사명 혹은 상표를 경쟁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사의 도메인명으로 등록하는 행위, 온라인 콘텐츠에서 상표권이나 상표를 허가없이 사용하는 행위, 비방 및 음란으로 간주되거나 인종차별적 표현 및 폭력 등 불법행위를 자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주소인 도메인명과 상표권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품질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는 친숙한 상표권에서 신뢰성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와 탐색엔진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상의 주소인 도메인명이 법인체의 신원확인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상표권과의 혼동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인터넷 도메인명은 월드와이드 웹(www) 서버에서 신분증의 역할을 할 뿐이며 보호받는 지적재산권이 아니다. 인터넷 도메인명의 오용이 가치 있는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인터넷 도메인명과 상표권과의 분쟁은 협상이나 법정소송을 통하여 해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중재조정센터를 설치하여 도메인명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도 1999년에 '인터넷주소무단점유방지법'을 제정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도메인네임을 선점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인터넷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명도 법원이 지적재산권을 부여하기 시작함에 따라 상표(trade mark)영역에서도 도메인명에 대한 규제와 감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정 기업에게 합당한 도메인명을 먼저 등록한 개인이나 기업은 현재 협의나 법정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관련 당사자들간의 화해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으로 관련규정을 포괄하는 문제도 협상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IV. 한국의 대응방안

전자기술의 발전에 기반을 둔 인터넷의 등장

으로 현재의 무역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무차별, 투명성, 중립성, 시장개방 등 WTO의 기본원칙은 유효하여야 하며 전자상거래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쟁점들 중 특히 전자전송의 분류에 대한 논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WTO의 미국은 GATT, GATS, TRIPs 및 기타 WTO협정에 구현된 자유화 약속이 존중된다면 새로운 규범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WTO 전자상거래 논의의 중심이 GATS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주요 쟁점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4.1 제도적 측면의 대응방안

WTO의 전자상거래 규범화 움직임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도메인이름 등록규정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 및 규정들은 주로 상위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뿐 세부규정의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1.1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 전자거래의 안전, 전자거래의 촉진,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기본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의 법적 지위와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들 법들은 일반적인 사항들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시행을 위한 규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국내의 전자상거래 상황만을 가정하여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전자거래의 지위, 안전,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가 요청된다.

4.1.2 관세 및 조세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무관세에 대해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합의된 바로는 오프라인거래 상품에 세관을 통과하게 됨으로 관세가 부과되며 온라인 거래는 유형의 과세대상이 없고 통관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당분간 현행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거래상품은 현행 관세법상 과세 대상물품이 아니며, 과세기술상 한계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향후 과세기술상 한계를 극복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온라인 거래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관세부과의 가능성은 필요할 것이다.

온라인거래에 대해서 과세기술상 거래사실에 대한 포착이 불가능하고, WTO제 2차 각료회의에서도 무관세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WTO, OECD 등의 국제기구 및 미국, EU 등의 선진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온라인거래가 영상, 음악, 설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의 통상 이익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사실에 대한 관세징수행정비용의 검토가 요구된다. 오프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구입비용이 저렴해짐으로 인하여 소량, 소액의 B2C 거래물품의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문물품에 대한 통관관리와 신속한 통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반입경로인 우편·특급택송화물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체제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전담부서의 설치도 필요하다. 영화나 음악의 경우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시 과세상

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해당부처 및 업계는 관세율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대에 맞는 전산시스템의 준비가 필요하다. 인터넷 환경하에서 적용이 가능한 전자선하증권, 전자송장, 각종 전자증명서를 수용할 수 있으면서 프라이버시 및 비밀번호를 위해 암호·전자서명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통관전산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전자자금 이체 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관세 등의 전자화폐 지불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 수출입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통관전산시스템을 현재의 VAN망 이용뿐만 아니라 웹망을 이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여야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마련과 관련하여 국내 기준의 기준마련에 협력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관세징수시스템의 검토가 필요하다.

4.1.3 지적재산권보호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우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WIPO 등에서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터넷상의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은 1995년 WTO의 TRIPS조약과 WIPO조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TRIPS에 규정한 효과적인 집행과 감시, 그리고 분쟁해결장치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WIPO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1999년 1월에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WIPO의 내용 중 기존 저작권법에서 제외된 내용을 보완하여 강화하였다. 다만 외국인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인정과 관련하여 현재 가입하거나 체결하고 있는 조약에 의거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대상, 권리, 효력 등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특허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기술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표와 인터넷 도메인명의 잠재적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도메인 할당체제를 개선하고 분쟁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1.4 소비자 보호와 내용물 보호

전자상거래에서는 판매자에 대한 물리적 실체의 불분명 및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및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내용물 규제방안 및 소비자 보호지침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불건전한 정보를 분류하고 공공목적의 정보규제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피라미드 판매 등 사기방지에 대한 기술적·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 내용물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의 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구제체도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4.1.5 통신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를 확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하고 신뢰성 있는 보안시스템 구축과 운용이 필요하며 암호기술의 사용에 대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진국의 암호기술의 보호에 대응하여 암호기술이 국가간에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자서명, 전자인증에 대한 국제규범 및 원칙마련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내법을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OECD 암호화 지침 및 사생활 보호지침을 수용하며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필요한 관련정보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한국형 표준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공개키 인증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시장주도의 표준제정 의견수렴을 위한 표준연구기관, 컨소시엄구성 및 테스트베이스 구축 등과 같은 민간부문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4.2 국제협상론적 측면의 대응방안

4.2.1 기본 협상방향

현재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는 주로 WTO, OECD, APEC 등과 같은 다자간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협상에 있어서 다자협상은 당사자가 둘 뿐인 쌍무협상과는 달리 협상상대방을 찾기가 어렵다. 다자간 통상협상은 다수의 협상상대국들이 협상상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협상의 중심국가'에 의하여 협상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OECD나 WTO의 전자상거래협상은 주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EU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이에 대해 보수주의적인 측면에서 반대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역시 선진국그룹측면에서 전자상거래의 이익측면에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급격한 무관세화, 자유화 등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보이면서 이와 동시에 선진국들로부터의 기술이전,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등을 요구하는 협상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상문제들인 내국세, 지적재산권, 내용물규제, 통신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미국의 입장보다는 EU의 입장에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관세화와 내국세의 제거에 대한 기본원칙에는 우리도 찬성하지만 국내산업에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들의 영구적인 규범제정에는 미국의 입장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 내용물 규제, 개인정보 보호 등은 선진국이 주장하는 민간자율에 의한 정책보다는 어느 정도 정부개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규범제정에 전략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암호기술의 민간이양의 제한에 대해 우리는 EU와 같이 이들 분야의 민간이양과 거래자유화의 입장을 견지해야 전자상거래의 통상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2 원칙협상전략의 적용

협상의 유형에는 분배적 협상(distributive negotiation)과 통합적 협상(integrative negotiation)이 있다. 분배적 협상은 경쟁식 협상으로 어느 한 당사자가 승리하면 다른 당사자는 패배하는 협상(win-lose)으로 일방이 승리를 보는 만큼 상대방은 손해를 보게 된다. 통합적 협상은 이해 당사자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어느 일방의 목적실현이 상대방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협상(win-win)이다.

연성협상(soft negotiation)은 자신의 입장이 없이 끌려가는 협상의 성격을 띠며, 경성협상(hard negotiation)은 보통 완강한 상대를 상정할 때 나타나는 협상전략으로 반드시 우월한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경성협상은 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이익의 배분도 어렵게 된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협상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협상전략으로

다른 당사자가 협상전략을 고수하는 한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원칙협상은 일방적 입장에 집착한 경성협상전략을 지양하고,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객관적이고 이슈중심적인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을 진행하는 전략이다.

다자간 협상에서는 협상상대와 의제가 다수이기 때문에 협상을 주도하는 몇몇 국가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연성협상의 경향을 띠기 쉽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통상협상은 개도국의 경우 이 부문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자국의 통상이익에 대한 분석이 약하기 때문에 자국에 불리한 통상규범에 합의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의 진입을 위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개도국을 대신하여 원칙협상전략에 근거한 협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우월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통상문제별로 우리와 같이 통상이익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내국세, 내용물규제, 통신보안 등의 문제에 대해 미국보다는 EU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협력체계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통상이익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내부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는 현재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 부처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처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문통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전문기술인력은 시스템공학연구소 등과 같은 일부 연구기관에서 배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전자상거

래 관련 통상협상을 대비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상이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분석할 수 있는 인력양성프로그램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상이슈에 대한 국제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자간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전자상거래의 기반조성을 위한 요소기술의 국제적인 표준화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협상 상대국들과 마찬가지로 통상규범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통상이슈별로 이익을 같이 하는 국가군들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4.2.3 공격적 협상전략의 사용

공격적 협상전략이란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가통상이익을 분명히 하고 협상의 초기단계부터 이런 원칙을 협상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의 소극적인 입장과는 다른 전략으로 특히 정부조달, 투명성, 경쟁관련 부문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정부조달업무가 전자상거래화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에의 진출기회가 더욱 많아지게 된다. 과거 정부조달협정에서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조달시장의 자유화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암호화 기술, 검색엔진의 비중립성,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제한 등은 미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들이 선진국에 의해 잠식되지 않고 공정하게 규범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협상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최근의 전자상거래는 통신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B2B 및 B2C 영역에서부터 최근의 e-marketplace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매체의 성장은 국내 및 국제 통상정책 분야에서 전자상거래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의 무역방식과는 다른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방식에 의한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등장은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WTO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지금까지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WTO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주로 국제무역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TO에서 전자상거래의 성격이나 분류, 기술적 중립성, 국내구제 등과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즉 여러 가지 문제 중 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의 분류에 대한 논의가 종결되지 않은 결과로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WTO 협정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따라 GATT 혹은 GATS협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자유화가 결정된다. 전자상거래 중에서 통상문제가 되는 부문은 디지털콘텐츠로 과거와 같은 기록매체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품 혹은 서비스로 분류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영역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분류와 적용규범 문제는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와도 직결된다.

전자상거래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경우 관세부가 가능하지만 서비스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회원국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우리 나라는 1997년 10월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전자거래기본법은 산업자원부, 전자서명법은 정보통신부, 전자자금이체법은 재정경제부에서 각각 입법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왔다. 전자상거래에 관련하여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전자상거래의 비중을 우리의 세계교역점유율 수준으로 제고하며, 모든 경제활동의 생산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제선진화를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이버 시장 신뢰성 제고,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촉진,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 사이버 무역기반 조성 등 5대 중점사업분야를 선정하여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규범은 아직 공공분야에 국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기업차원에서 적용하기에는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규범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역관련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하기구에서 다루기 어려운 공통이슈들을 다루는 특별작업반의 구성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에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통상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세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인증·보안 및 암호화 기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제통상협상에서는 이슈별로 통상이익을 같이하는 국가군과의 연대를 통하여 원칙협상의 구도하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협상전략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수 외 7인, 「국제통상론」, 2000.
- 김민수 외, 「전자상거래 국제협력 및 국가전력」, 한국전산원, 1999. 6.
- 김희철·이신규, 「국제무역의 이해」, 두남, 2000. 1.
- 남진우, “전자무역거래상의 전자식 운송서류활성화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권 제1호, 1999. 7.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 현황과 인터넷무역」, 1999. 8.
- 심상렬, “인터넷 무역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한국통상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9. 7.
- 왕상한,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 박영사, 2001.
- 이달곤, 「협상론」, 법문사, 1996.
- 이성봉·김유찬, “전자상거래 조세관련 국제논의와 대응방안”, 「통상법률」, 통권 제23호, 법무부, 1998. 10.
- 이종화·이성봉,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대외정책연구원, 1997.
- 윤창인, 「통상관련 전자상거래 논의동향과 시사점」, KIEP정책연구자료 98-18, 1998.

- _____,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동향과 시준점”,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2.
- 외교통상부, 『WTO 전자상거래 논의현황 및 대응방안』, 2001.
- _____, 『도하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http://www.mofat.go.kr>. 2002.
- 정영현,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심포지움, 1997.
- 정완용,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32권, 제1호, 1997.
- 한국전산원, 『2000 한국인터넷백서』, 한국전산원, 2000.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국제규범 워킹그룹」, 2002.
- Amjad Umar, Palo Missier, *A Framework for Analyzing Virtual Enterprise Infrastructure*, IEEE, 1999.
- Kalalkota, Ravi and Andrew Whinston, *Electronic Commerce: A Manager's Guide*, Addison-Wesley, 1997.
- Kosiur, Darid, *Understanding Electronic Commerce*, N.Y. : Microsoft Press, 1997.
- Panagariya, Arvind, *E-Commerce, WTO and Developing Countries*, University of Maryland, mimeo, 1999.
- WTO, a.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 WTO, 1998. 8.
- _____, b. “Work Program on Electronic Commerce.” G/C/W/128, 1999. 7.

Current Discussions on Electronic Commerce in the WTO and Korea's Response

Shin-Kyuo Lee*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cent discussions in the WTO and to draw some basic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concerning electronic commerce. To foster electronic transactions, the WTO agreement should establish a basic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to guarantee a stable and predictable environment. The member countries in the WTO, however, have not formed a consensus on the definition, classification, technological neutrality, and domestic regulations dealing with electronic commerce.

Digital transfer and classifications of electronic transfer are the most difficult problems to be solved. The discussions on electronic commerce which had been on hold after the Seattle Ministerial is due to begin in a special working group of specialists.

Electronic transactions in Korea have been increased rapidly and the implementation of concrete forms and rules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 WTO will be influential to international trade as we adopt them in the transactions. Therefore, we have to open our eyes to the trends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is matter and to make our rules and laws of electronic commerce to the international levels.

* Dept. of International Commerce, Paichai University.